

두산원자력기술상 운영규정

제 정 2008. 07. 04

개 정 2009. 03. 10

개 정 2009. 12. 10

개 정 2010. 08. 26

개 정 2014. 03. 21

개 정 2014. 05. 02

개 정 2015. 03. 13

개 정 2018. 07. 06

개 정 2022. 07. 08

개 정 2025. 11.12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원자력공학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루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개인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표창하고 앞으로 더욱 현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 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 포상 규정 제 2조 제3항에 의거, 두산에너지빌리티의 기부금에 의한 특별상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 특별상의 명칭은 두산원자력기술상(Doosan Nuclear Technology Award)(이하 “두산상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 3 조 (포상 대상) 두산상은 원자력공학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이루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신진 또는 중견(시상일 기준 만 50세 이하)의 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.

제 4 조 (포상 내용) 두산상은 포상 이유를 명기하는 상패와 부상(상금 1000만원)으로 한다.

제 5 조 (재원) 두산상은 두산에너지빌리티로부터 기부 받은 3억원의 원금과 과실금으로 운영한다.

제 6 조 (시상 시기 및 장소) 두산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(추계학술발표회장)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7 조 (선정 절차 등) 두산상의 수상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거 선정한다. 다만, 추천이 없거나 심사 또는 심의.확정 과정에서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수상 후보자 추천
2. 포상 및 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사 및 최종 수상 후보자(1인) 선정
3. 이사회 심의 및 확정

제 8 조 (수상 후보자 추천 등) ① 두산상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 다만, 학회 임원과 위원회 위원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.

1. 연구회장
 2. 두산상 기 수상자
 3. 정회원 3인 이상
- ② 수상 후보자 추천은 서면으로 하며 추천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소정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1. 인적 사항
 2. 업적 명칭 및 전문분야
 3. 추천 사유
 4. 주요 업적 내용
 5. 전문 분야에서의 장래성 및 산업적 기여 효과
- ③ 적격하게 추천된 수상 후보자는 추천자의 추천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1. 상세 인적 사항
 2. 평가대상 기술의 상세 업적 및 우수성(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별도 제출)
 3. 평가대상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, 국내외에 등록된 지적재산권 등

제 9 조 (수상자 후보 심사 등)

- ① 위원회는 후보자 심사시 제 1 조 목적에의 부합 여부와 업적 및 장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 평가에 필요한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.
- ② 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서류를 검토한 후 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각 후보자에

대한 무기명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점수를 평균한 후, 최고 득점자 1명을 최종 수상 후보자로 선정한다.

제 10조 (이사회 심의 및 확정) 이사회에서는 추천 및 심사과정의 적절성과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최종 수상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.

제 11 조 (수상 회수 제한) 학회는 두산상을 동일인에게 2회 이상 수여하지 아니한다.

제 12 조 (준용 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회 포상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